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기 및 선박 대상 무작위 표본조사에 의한
검역조사 등〉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206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주요 검토사항	6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6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1. 21.
- (3) 회 부 일 : 2026. 1.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검역조치의 수행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5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출입국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병원체 등이 발생된 경우 탑승객이나 탑승 예정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검역감염병 병원체 등이 확인된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하여는 검역조치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 3제2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제12조의4제3항 단서 및 제7항 신설,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생략)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u>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u>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u>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②
(생 략)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 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 단서에 따라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8. (생략)
② ~ ⑤ (생략)

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였거나 승선
할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15조(검역조치) ① -----

----- . 다만,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
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
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
나 화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2. 주요 검토사항

가. 항공기 및 선박 대상 무작위 표본조사에 의한 검역조사

□ 개정안은 입·출국하는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검역조사 방식 (현행법 제12조제1항)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조사2.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조사3.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조사4.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조사 |
|--|

□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¹⁾는 검역조사를 서류심사로 실시할 수 있되,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접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1) 제12조의3(항공기 검역조사) ①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제12조의4(선박 검역조사) ①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서류심사에 의한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

구분	서류
항공기	1.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출입국자가 작성한 건강상태 질문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선박	1.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2.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출입국자가 작성한 건강상태 질문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는 경우 >

구분	요건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항공기	1. 항공기의 장이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박	1. 선박의 장이 다음의 내용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4.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질병관리청이 최근 3년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실시한 검역조사 방식을 보면 총 920,451건 중 866,528건(94.1%)을 서류심사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한 경우는 53,923건(5.9%)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검역조사가 서류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참고로 질병관리청이 2023년 7월~11월에 실시한 항공기 승기검역을 통한 ‘기내 위생점검 결과’에 따르면 검역 항공기 493편 중 11.8%인 58편의 항공기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바 있으나, 전체 검역조사에서 서류심사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92.8%에서 2025년 95.6%로 오히려 증가한 바 있음.

< 2023년 승기검역에 따른 항공기 검사 결과 >

- 검사기간: ‘23. 7. 31. ~ 11. 14.
- 검사종류: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
 - * 장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파라티푸스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패혈증균, 살모넬라균, 장독소성대장균, 장침습성대장균, 장병원성대장균
- 검사방법: 항공기 도착 후 승기하여 기내 검사물 채취
- 검사결과: 항공기 총 493편 중 58편에서 병원균 검출(11.8%)

구분	검사물(편, A)	병원균 검출(편, B)	검출률(% B/A)
계	493	58	11.8
인천	222	49	22.1
김해	151	5	3.3
대구	107	4	3.7
제주	4	-	-
무안	9	-	-

자료: 질병관리청

< 최근 3년간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 방식 및 횟수 >

(단위: 건)

구분		서류심사건수 (비율)	탑승조사건수 (비율)	합계
2023	항공기	211,940 (99.6%)	784 (0.4%)	212,724
	선박	34,179 (65.0%)	18,443 (35.0%)	52,622
	계	246,119 (92.8%)	19,227 (7.2%)	265,346
2024	항공기	266,747 (99.4%)	1,713 (0.6%)	268,460
	선박	32,963 (64.2%)	18,380 (35.8%)	51,343
	계	299,710 (93.7%)	20,093 (6.3%)	319,803
2025	항공기	282,485 (99.7%)	954 (0.3%)	283,439
	선박	38,214 (73.7%)	13,649 (26.3%)	51,863
	계	320,699 (95.6%)	14,603 (4.4%)	335,302
총 합		866,528 (94.1%)	53,923 (5.9%)	920,451

자료: 질병관리청

- 이에 개정안은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무작위 탑승 검역을 도입함으로써 검역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기 및 선박의 장이 책임 있는 서류제출과 방역수칙 준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현재도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탑승하여 검역할 수 있으나, 무작위 표본조사라는 근거 규

정이 있을 경우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하는 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나.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 등이 발견된 경우 승객에 대한 통지

- 개정안은 항공기 및 선박에서 검역감염병 감염자, 병원체 또는 매개체 등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탑승자 및 탑승 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 등이 확인된 경우 「검역업무지침」에 따라 감염자 및 접촉자²⁾에 대하여는 감시·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외 일반 탑승객을 대상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 등이 확인된 경우 조치 사항 >

구분		조치사항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유증상자 또는 의사환자	·(유증상자) 검역감염병별 대응 지침에 따름 ·(의사환자) 질병관리청에 발생보고 및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접촉자	·질병관리청에 발생보고 및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관할 시·도(시·군·구)에서 접촉자 조사 및 모니터링

2) 접촉자 분류 기준: 감염병 특성에 따라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과의 역학조사(접촉시간, 접촉공간, 접촉 정도 등 고려)를 통해 확정(「검역감염병 대응 지침」)

- 항공기: 의사환자 근접좌석 탑승객(감염병 종류에 따라 판단)
- 선박: 역학조사관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구분		조치사항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¹⁾ 가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 및 검역소에 즉시 보고 및 통보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을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하여 관할 시·도(시· 군·구)에서 접촉자 조사 및 모니터링 ※ 환자가 단체 여행객의 일원일 경우 단 체여행객 전체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 도(시·군·구)에 통보하며, 관할 시·도 (시·군·구)는 단체 여행객에 대해 설사 증상 등 이상 여부 확인 및 유증상자 검체채취 등 필요 조치 시행
	그 밖의 병원체가 확인된 경우	·질병관리청 및 검역소에 즉시 보고 및 통보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시, 격리시설로 입원 조치 ·환자 및 접촉자(단체여행객)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에 통보 하여 발열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 고,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 요청

주1)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자료: 「검역업무지침」

□ 이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탑승객 및 탑승 예정객은 자신
이 탑승하였거나 탑승 예정인 운송수단에서 검역감염병 환자나 병
원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적절한 예방·대
응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참고로 2025년 검역을 통해 확인된 국내 검역감염병 현황을 보
면, Dengue 108명, Chikungunya 9명, Zikavirus 3명,
Hantavirus 78명 등임.

< 검역감염병 국내외 발생 현황(2024~2025년) >

(단위: 명)

감염병명	국내	
	'24년	'25년
콜레라	-	-
페스트	-	-
황열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	-
신종인플루엔자	-	-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	-
에볼라바이러스병	-	-
폴리오	-	-
덴기열	196	108
치쿤구니아열	9	9
지카바이러스감염증	-	3
홍역	49	78
마버그열	-	-
라싸열	-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
신종감염병증후군	-	-

자료: 질병관리청

□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 등이 발견된 사실에 대한 통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탑승 예정자는 감염병 노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스스로 탑승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탑승한 경우에도 자발적인 검사 및 진료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통지 대상 감염병을 모든 검역감염병으로 하고 있으나, 대상 감염병의 전파력, 위험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일반 탑승자에 대한 통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검역감염병별 감염경로 >

감염병명	감염경로	비고
콜레라	해산물, 음용수, 분변, 구토물 등	
페스트	쥐벼룩, 동물, 화농성 분비물, 호흡기 비말	
황열	모기, 혈액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호흡기 비말, 오염된 매개물, 야생동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가금류, 돼지	드물게 사람 간 전파 가능
신종인플루엔자	호흡기 비말, 공기 전파, 신체 접촉 등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낙타, 호흡기 비말, 공기 전파, 신체 접촉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동물, 혈액·체액, 직·간접 접촉 등	
폴리오	분변, 경구 등	
뎅기열	모기, 혈액	
치쿤구니아열	모기, 혈액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모기, 성접촉, 혈액	
홍역	호흡기 비말, 공기 전파	
마버그열	동물, 혈액·체액	
라싸열	설치류, 혈액·체액, 성접촉 등	
크리미안콩고출혈열	진드기, 동물, 혈액·체액, 침습적 의료행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동물, 식품, 체액	
신종감염병증후군 ¹⁾	-	

주1: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
 자료: 「검역감염병 대응 지침」

□ 또한 개정안에 따른 통지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역소장이 항공기 또는 선박의 장에게 승객예약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탑승 예정객이 감염병 노출 우려로 탑승을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환불 범위를 둘러싸고 승객과 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 및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 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감시를 수행 중에 있으며, 밀접 접촉자 외의 자에게까지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과도한 측면이 있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검역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시 검역조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

□ 현행법은 검역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등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환자 등에 대한 감시·격리 조치나 오염된 운송수단 및 화물의 소독·폐기 등 필요한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량 규정에 해당함.

제15조(검역조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2.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하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라 한다)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3.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4.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 4의2.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5. 삭제
6.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7.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8.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② ~ ⑤ (생략)

□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환자 및 병원체 등의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맡겼던 검역조치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이는 행정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현재 검역조치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검역감염병 환자나 매개체 발생 시 「검역업무지침」에 따라 감시·격리·소독명령 등의 검역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질병관리청 (일부 수용)

□ 개정안을 통해 검역조사 방식을 보완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안 취지에 일부 동의함.

- (무작위 표본조사에 의한 탑승조사) 검역조사 시 서류심사의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행 조사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이므로 신설 취지에 공감
- (검역감염병 환자, 병원체, 매개체 발견 시 탑승객에 대한 통지)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시 접촉자 감시를 수행 중이며, 밀접 접촉자 외의 자에게까지 발생 정보 제공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의무적 검역조치) 개정안 관련 검역감염병 환자, 병원체, 매개체 발생 시에 따른 검역조치는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해 수용

문 의 처
02)6788-5496